

## 올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

- 발급 대상 확대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·추위민감계층까지 포함)
- 하절기 지원 단가 인상(4만→4.3만 원)
-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발급 신청 가능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5월 31일(수)부터 12월 29일(금)까지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'23년도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사업의 신청·접수를 시작한다.

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. 올해에는 전기·가스요금이 인상되고,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.

먼저, '22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·더위 민감계층(27.8만 가구(추정치))을 '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, 올해 세대 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.5만 원(하절기 4.3만 원, 동절기 15.2만 원)이다.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 단가를 0.9→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.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. 동절기 이용권(바우처) 금액 중 4.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,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.

아울러,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(신청 후 1~2개월 소요)된 이후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, 5.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전화상담실(콜센터, ☎1600-3190)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누리집([www.energyv.or.kr](http://www.energyv.or.kr))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	책임자	과 장	김재은 (044-203-5240)
	자원안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광수 (044-203-5253)

**붙임 1****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**

(개 요)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

(지원대상) 「소득기준」 과 「세대원특성기준」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- 노인 (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)
- 영유아 (주민등록기준 2017. 1. 1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- 임산부 (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)
- 한부모가족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)
- 소년소녀가정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(지원금액)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

구 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	내 용
하절기	31,300원	46,400원	66,700원	95,200원	· 요금차감(전기)
동절기	118,500원	159,300원	225,800원	284,400원	· 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) · 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총 금액	149,800원	205,700원	292,500원	379,600원	·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\*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

\*\*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.5만원,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)

(지원절차) 신청·접수(읍·면·동) → 선정·결정통지(시·군·구) → 바우처 생성·발급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·정산·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
\*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 필요  
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·발급

(신청기간) '23. 5.31. ~ 12.29. \*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: '23. 5.31. ~ 9.30.

(사용기간) '23. 7. 1. ~ 9.30.(하절기), '23.10.11. ~ '24. 4.30.(동절기)

(전담기관) 한국에너지공단(☎1600-3190)



시원한 여름,  
따뜻한 겨울

# 에너지바우처

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## 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 
\*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나 읍·면·동에 사전 문의

## 신청기간

2023년 5월 31일 ~ 12월 29일

## 신청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)이 있는 세대

## 사용안내

구분	지원기간	사용방법
하절기 바우처	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	요금차감전기
동절기 바우처	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	요금차감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) 국민행복카드 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
\*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자 생년월일과 일치 지원  
\* 국민행복 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재만 필요

## 바우처 금액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세대
하절기	31,300원	46,400원	66,700원	95,200원
동절기	118,500원	159,300원	225,800원	284,400원
총 금액	149,800원	205,700원	292,500원	379,600원

\*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실제 지원금액이 아닌  
\*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하절기 바우처로 인계될 수 있음 (최대 4천원, 희망세대인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  
\* 하절기 바우처금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

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  
홈페이지 www.energy.or.kr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에너지공단